

의안번호	2211316
의 퇴 인	임오경의원
회 답 일	2025. 8. 8.
추계번호	25C34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의5(체육영재학교의 설치·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체육영재를 교육하기 위하여 신체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체육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음(제1항) 그 밖에 체육영재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4조의5(체육영재학교의 설치·운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체육영재학교의 설치·운영(안 제14조의5)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체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에 따라 체육영재학교가 설치되고 운영될 시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2024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수행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연구”에 따르면 국립체육영재학교 사업비 예산으로 1,361억 5,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고,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¹⁾

1) 연구수행기간: 2024. 3. 6. ~ 2024. 12. 2.

[표] 국립체육영재학교 사업비 예산(안)

구분		단가(원)	규모(m²)	금액(백만원)
부지매입비		138,844	181,544	25,206
공사비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포함)	2,001,162	30,675	61,386
	전기	264,847	30,675	8,124
	통신	219,415	30,675	6,731
	공사비 소계			76,240
용역비	용역비	125,235	30,675	3,842
	설계비	2,731	30,675	84
	감리비	87,426	30,675	2,682
용역비 소계				6,607
실내빙상장(건설비)			5,000	19,650
기타(시설부대비)		5,101	30,675	156
예비비		270,592	30,675	8,300
합계				136,159

- 다만, 국립체육영재학교에 대한 설립·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국립체육영재학교 입지나 규모,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추정하기는 어려워,²⁾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앞의 기본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설립한 체육중고등학교(충북체육중고등학교, 2014년)와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2015년)의 설립자료를 기초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치 예정 지역을 세종시로 가정하여 해당 건립비용을 추정하였음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assembly.go.kr